

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5년 12월 14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배 치 열)

□ 제안이유

-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복구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, 내구연한 감소, 교통소통저해와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표준(안)이 시달(도 건설계획과-11079, 2004. 5. 24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도로 굴착·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폭을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 확보 시행하도록 하고,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하여 덧씌우기(표층) 면적을 차로 단위로 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원인자 복구시 재료 및 품질시험으로 부등침하 등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input type="radio"/>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3호
의결 년월일	2005. 12. 23 (제123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1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복구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, 내구연한 감소, 교통소통저해와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표준(안)이 시달(도 건설계획과-11079, 2004. 5. 24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도로 굴착·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폭을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 확보 시행하도록 하고, 도로굴착 또는 훼손율을 고려하여 덧씌우기(표층) 면적을 차로단위로 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나. 원인자 복구시 재료 및 품질시험으로 부등침하 등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□ 첨부

-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”라 함은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·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.
2. “원인자”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 또는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

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
4. “손케부분”이라 함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도로를 손케하는 부분을 말한다.
5. “부담금”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케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.

제3조(복구공사의 시행) ①도로를 손케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.

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4조(부담금 징수) ①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케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고,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,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

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·

징수하되,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,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

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.

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) ①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

1.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2.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
3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원인자 색출)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케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,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,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.

제7조(과태료)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의신청)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·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.

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
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(제4조제3항관련)

종 별	부 호	적 용 면 적	적 용 범 위
아스팔트 포장도로	A-1	표층 : 10cm 중층 : 15cm 기층 : 20cm 보조기층 : 40cm	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(폭 25m 이상) 및 이에 준하는 도로
	A-2	표층 : 5cm 중층 : - 기층 : 15~20cm 보조기층 : 30cm	지선도로
	A-C	표층 : 5cm 콘크리트 : 20cm 보조기층 : 20cm	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
콘크리트 포장도로	C-1	표층 : 20cm 보조기층 : 20cm	폭 6m 이상
	C-2	표층 : 15cm 보조기층 : 15cm	폭 6m 미만
보 도	일반보도	일반보도블럭표층 : 6cm 모래 : 3cm 기층 : 10cm	
	유색보도	일반보도블럭표층 : 6cm 모래 : 3cm 기층 : 10cm	
	대형고압 (오나멘트)	대형고압표층 : 4.5cm 모래 : 3cm 기초콘크리트(5중) : 10cm	
	소형고압	소형고압블럭표층 : 6cm 모래 : 4cm 기층 : 10cm	
	화강석	화강석표층 : 3cm 모래 : 4.5cm 기초콘크리트(레미콘) : 20cm 기층 : 10cm	
	투수성 아스팔트	투수성아스콘표층 : 10cm 기층 : 10cm 모래 : 5cm	
	기 타	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	
사 리 도		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	
기타도로시설물	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		

- 비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 20cm 추가 하여야 한다.
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,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.
 ③ 기층·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하여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.

[별표 2]

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(제4조제3항관련)

-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,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.
- 도심지 내의 도로,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,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과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, 시공 지침(건설교통부)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.
-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.
-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, 준공검사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<현행 조례>

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

[1990. 10. 06 조례 제1061호]

[1997. 08. 01 조례 제1536호]

[1999. 09. 08 조례 제1690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.
2. "도로복구공사"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3. "직접손괴부분"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
4. "간접손괴부분"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

제3조(부담금징수) ①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총사업비(부대경비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,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,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

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.

⑤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.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 시장은 공사를 집행한 다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의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, 공사집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.

제5조(복구공사의 시행)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중

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.

제6조(손피자 확인의뢰)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피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손피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 한다.

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사기, 부실시공,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를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권한위임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
2. 제4조의 부담금의 환부 및 차액추징
3.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
4. 제6조의 손피자 확인
5. 제7조의 과태료 징수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(1999.09.08 조례 제169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